#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허성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964

발의연월일: 2025. 2. 7.

발 의 자:허성무·김동아·정혜경

송재봉 · 이재관 · 김문수

이강일 • 윤종오 • 서미화

김병주 • 박해철 • 오세희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온실가스 저감 대책의 하나로 수소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소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임.

그런데 수소산업에 수소엔진 등 관련 사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분야에 대한 국가 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수소엔진 및 액체수소 관련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관련 산업에 대한 국가의 정책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1호·제12호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##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"판매 및"을 "판매·수소엔진 및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1. "수소엔진"이란 수소 또는 수소를 포함하는 연료를 연소하여 출력을 내는 엔진을 말한다.
- 12. "액체수소시설"란 대기 압력 기준 -253℃(영하 252.7℃)이하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수소를 취급하는 시설을 말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		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	
2. "수소산업"이란 수소의 생산	2		
·저장·운송·충전· <u>판매 및</u>	<u></u> 판매·수		
연료전지, 수소가스터빈 등	<u>소엔진 및</u>		
수소를 활용하는 장비와 이에			
사용되는 제품・부품・소재			
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			
련한 산업을 말한다.			
3. ~ 10. (생 략)	3. ~ 10.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11. "수소엔진"이란 수소 또는		
	수소를 포함하는 연료를 연소		
	하여 출력을 내는 엔진을 말		
	<u>한다.</u>		
<u>&lt;신 설&gt;</u>	12. "액체수소시설"란 대기 압		
	력 기준 -253℃(영하 252.		
	7℃)이하에서 액체로 존재하		
	는 수소를 취급하는 시설을		
	<u>말한다.</u>		